

비전임교원인사규정

제정 2022.10.20.

개정 2023.09.18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에서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초빙교수: 교육 및 예술분야, 연구기관,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그 전공 또는 경력 등과 관련하여 연구, 교육활동을 하도록 초빙된 교원을 말한다.
- ② 겸임교수: 산학연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·연구기관·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인사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본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- ③ 특임교수: 국가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로서 본교의 교육목적상 임용된 자를 말한다.
- ④ 석좌교수: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공적이 인정되는 인사 중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본교의 교육목적상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개별계약의 원칙) 비전임교원의 임용(위촉)계약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계약 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적용범위)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임무) 비전임교원은 법인 정관 및 우리 대학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.

제6조(면직) ① 비전임교원이 임용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 할 수 있다.

1. 정관,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
3.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비전임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4. 소속 스쿨(전공)이 폐과 되었을 경우
5. 담당교과목이 모두 폐강된 경우
6.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- 가. 제5조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
 - 나. 수업 및 결·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 - 다. 성적평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
 - 라. 학사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7.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
8.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·선도한 때
 9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
 10.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-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학부(과)장은 총장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7조(휴직)**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.
- 제8조(징계)** 비전임교원은 본교 교원징계규정에 따른다.
- 제9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장 초빙교수

제10조(자격)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교과를 교육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.

- ①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
- ②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
-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
- ④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자
- ⑤ 각 모집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

제11조(임용) ① 신규채용은 공개 혹은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. 다만, 본교를 정년퇴직한 교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 전임교원 전체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-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- ③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각호, 제1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할 수 있다.
- ④ 신규임용 절차는 교원신규임용공개채용심사지침에 따라 실시한다.
- ⑤ 초빙교수는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.

제12조(재임용) ① 초빙교수의 임용권자는 당해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초빙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초빙교수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초빙교수를 재임용 할 때는 직전 2개학기 수업평가 평균 4.0 이상인자로 해당스쿨의 전임교원의 전체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- ④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초빙교수에게 지정된 기일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3조(임용시기 및 임용기간) ① 교원의 임용 시기는 매년 학기 초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제 39조의5 에 의한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3년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. 다만 3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당연퇴직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.

제14조(복무 및 처우) ① 초빙교수의 책임시수는 “수업지침3. 시간표 작성 시 유의사항”규정에 따른다.

② 초빙교수는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동안 타기관 출강 또는 겸직 할 수 있다.

③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은 겸직할 수 없다.

제15조(임금) ① 초빙교수의 강의료는 교직원보수규정의 강의료 기준에 의하며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3장 겸임교수

제16조(자격)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·실험·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.

①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
②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

③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(유사경력이 3년 이상)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단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)

④ 소속 기관장의 출강동의를 받을 수 있고 타대학 겸임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임용되지 않은 자

⑤ 각 모집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

⑥ 소속 기관장의 출강 동의를 받은 자

제17조(임용) ① 신규임용은 공개 혹은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. 다만, 본교를 정년퇴직한 교수의 경우에는 해당학과 전임교수 전체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③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각호, 제1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할 수 있다.

④ 신규임용 절차는 교원신규임용공개채용심사지침에 따라 실시한다.

⑤ 겸임교수는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.

제18조(재임용) ① 겸임교수의 임용권자는 당해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겸임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겸임교수는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겸임교수를 재임용 할 때는 직전 2개학기 수업평가 평균 4.0 이상인자로 해당스쿨의 전임교원의 전체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④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겸임교수에게 지정된 기일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9조(임용시기 및 임용기간) ① 교원의 임용 시기는 매년 학기 초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제 39조의 5 에 의한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따른다.

제20조(복무 및 처우)① 겸임교수의 책임시수는 “수업지침3. 시간표 작성 시 유의사항”규정에 따른다.

② 겸임교수가 타 대학에 출강 할 경우 타대학 출강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(임금) ① 겸임교수의 강의료는 교직원보수규정의 강의료 기준에 의하며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4장 특임교수

제22조(자격) 특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① 국내·외에서 연구실적과 산업체 현장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

② 특정분야의 권위자로서 업적이 탁월하며, 본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

③ 대학의 홍보, 프로젝트 등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

④ 기타 본 교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

제23조(임용) 특임교수는 해당 스쿨 및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쿨 원장 및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

제24조(임기) ① 특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.

②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한다.

1.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

2.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
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제25조(구비서류) 특임교수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① 특임교원 추천서(서식 제1호)

② 이력서(서식 제2호)

③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

④ 연구실적서(필요시)

⑤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
제26조(처우) 특임교수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다

-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하여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하거나 강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의료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특임교수에 대한 강의료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7조(임무) 특임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강의 또는 연구
- ② 특별강연, 세미나
- ③ 기타 본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

제5장 석좌교수

제28조(자격) 석좌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① 국내·외에서 연구실적이 현저하고, 교육경험이 풍부한 자
- ② 특정분야의 권위자로서 업적이 탁월하며, 본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
- ③ 기타 본 교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

제29조(임용) 석좌교수는 해당 스쿨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쿨 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, 이사회에 보고 한다.

제30조(임기) ① 석좌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.

- ②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한다.
 1.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
 2.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 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제31조(구비서류) 석좌교수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- ① 석좌교원 추천서(서식 제1호)
- ② 이력서(서식 제2호)
- ③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
- ④ 연구실적서(필요시)
- ⑤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
제32조(처우) 석좌교수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다

-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하여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하거나 강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의료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석좌교수에 대한 강의료 또는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3조 (임무) 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강의 또는 연구
- ② 특별강연, 세미나
- ③ 기타 본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(서식1호)

(특임 / 석좌)교수 추천서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성 명 | (한글) | (한자) | (영문) | | |
| 국 적 | | 생년월일 | 년 | 월 | 일 |
| 현 소속 | | 직 위 | | 연락처 | 자택: 회사: H P: |
| 현 주소 | | | | | |
| 전공분야 | | | | | |
| 희망임용기간 | 년 | | 월 | 일 | ~ |
| 희망 강의교과목 또는 특강 | | | | | |

위와 같이 (특임/석좌)교수를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스쿨 원장: _____(인)

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귀하

(서식2호)

이 력 서(특임 / 석좌)

1. 인적사항

| | | | | | | | |
|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| 성 별 | 남 · 여 | 국 적 | | 병 역 | 필 · 미필 · 면제 | |
| | 생년월일 | 19 년 월 일 (만 세) | | 주민등록 번호 | - | | |
| | 본 적 | | | | | | |
| | 현 주 소 | (우편번호: -)E-mail:) | | | 전 화 번 호 | 자택(국내) | |
| | 현근무지 | | | | | 국 외 직 장 | |

2. 학력사항

| 구 분 | 기 간 | 학 교 명 | 학 과 (세부전공) | 학위 취득일 | 학위등록번호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고 졸 | | | | | |
| 전문학사 | | | | | |
| 학 사 | | | | | |
| 석 사 | | | | | |
| 박 사 | | | | | |
| 학 위 논 문 | 석사 | 지 도 교 수 | | 논 문 제 목 | |
| | 박사 | 지 도 교 수 | | 논 문 제 목 | |

3. 연구실적

| 발표구분 | 저자명(전원) | 제 목 | 게재지명 | 발행기관 | 발 표 년월일 |
|------|---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특임교수 임용계약서

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(이하“갑”이라 한다.)과 _____(이하“을”이라 한다.)은 특임교수 임용에 따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1. “갑”은 “을”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특임교수로 임용한다.
2. “을”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.
3. “갑”은 “을”이 계약기간 중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4.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계약에 명시한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.
- 5 “을”은 계약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 한다.
- 6 “갑”은 “을”이 법령, 규정 또는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체, 정신적 사유로 강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7 “갑”은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“을”이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변경(계약기간 제외)할 수 있다.
8.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교 특임교수규정에 따르며,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(갑)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
(인)

(을) 성 명: (인)
직 위: 특임교수
소속스쿨:
생년월일:
주 소:

석좌교수 임용계약서

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(이하“갑”이라 한다.)과 _____(이하“을”이라 한다.)은 석좌교수 임용에 따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1. “갑”은 “을”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한다.
2. “을”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.
3. “을”의 보수액은 연 금 _____ 원(W _____)으로 한다.
보수액은 매월 금 _____ 원을 본 대학 보수 지급일에 분할 지급한다.
4. “갑”은 “을”이 계약기간 중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5.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계약에 명시한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6 “을”은 계약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 한다.
- 7 “갑”은 “을”이 법령, 규정 또는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체, 정신적 사유로 강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8 “갑”은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“을”이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변경(계약기간 제외)할 수 있다.
9.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교 석좌교수규정에 따르며,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(갑)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
(인)

(을) 성 명: _____
직 위: 석 좌 교 수
소 속 스 쿨 : _____
주민등록번호: _____
주 소: _____

(인)